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5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김동욱, 김성준,
김영철, 민병주, 박승진,
박영한, 박철성, 봉양순,
서준오, 아이수루, 유만희,
, 유정희, 이영실, 이용균,
이원형, 임규호, 임종국,
정준호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도모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진흥계획 수립시 자치구청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.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5조(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p>
<p>제6조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시장, <u>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 <u>구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